

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의결주문

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양종렬, 강봉호 등 2인을 2010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함을 의결 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자 인적사항

- (1) 양종렬(60세, 남) - 서울시 도봉구 창4동. 前 평창경찰 서장
- (2) 강봉호(62세, 남) - 강원 강릉 포남동. 前 평창교육장

나. 대상자 공적개요

- (1) 양종렬 - 시행규칙 제2조 5호 요건 해당자
○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활동에 힘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
- (2) 윤재원 - 시행규칙 제2조 5호 요건 해당자
○ 명품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발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

3. 참고사항

- 가. 대상자 공적조서 - 별첨
- 나. 관련법규 - 별첨

붙 임 2010 명예군민증서 추천현황 및 공적요약 1부. 끝.

【붙임】

2010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심의대상자 현황 및 공적요약

연번	추천 대상자	추천 사유
1	<p>성명 : 양종렬 (60세, 남) 직위 : 前 평창경찰서장 주소 : 서울 도봉구 창4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창경찰서장 재직시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거노인 및 명절 전후 위문행사 실시 -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-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에 조손가정 방문 꽃 달아주기 및 집안 청소 등 약자보호 활동에 기여 ○ 아동 성폭력 예방에 적극 기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내 초등학교 20개교 대상 교육청·지자체·협력단체 합동 방범진단 실시, 교내 외 범죄 취약지 CCTV 추가 설치로 아동 등·하교길 범죄예방활동 기여 - 아동 범죄예방 활동할 3개 초등학교 60명의 어머니들을 어머니폴리스로 위촉, 초등학교 주변 범죄 취약지 아동 성폭력 예방 등 범죄 예방 활동 지원 - 지역 내 협력단체의 대표급 임원들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 구성, 현안업무 토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-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, 서비스 요청자 대상으로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지정과 연계한 원터치 SOS 서비스 운영으로 강력범죄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범죄예방활동에 기여, 관내 약 3,000명 가입완료토록하여 아동 성폭력 예방에 기여
2	<p>성명 : 강봉호(62세, 남) 직위 : 前 평창교육장 주소 : 강릉 포남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창군 지역 학교의 명품교육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장(2008. 3 ~ 2010. 8) 역임시 평창교육발전 기여 - 『HAPPY 700 기쁨이 있는 평창교육』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□교사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□, □학생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며□, □학부모 및 지역사회 모두는 바라보는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으로□의 인식의 전환과 명품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교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폐교 위기의 소규모 농촌학교들이 교육경쟁력을 갖춰 □찾아오는 학교상□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 - 학교체육활성화 및 선수육성 ('10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2부 종합우승)

[참고자료]

평창군명예군민 선발기준 및 특전(요약)

■ 명예군민 수여대상자의 요건(규칙 제2조)

-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 동포 중 다음 각호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.
 1. 문화예술,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
 2.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향상
 3.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
 4.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
 5.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
- 단,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.

■ 수여대상자의 추천 : 각 부서에서 추천

■ 대상자 심의 및 확정

-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를 심의 한다.
-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확정 한다.(조례 제2조)

■ 명예군민에 대한 특전(규칙 제5조)

1.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및 사유시설의 지역주민과 동일한 대우
2.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 초청
3.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
4.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 등

■ 명예군민에 대한 증서의 수여

1. 명예군민증서 수여(별지1호 서식)
2. 휴대용 명예군민증(별지 제2호 서식)
3. 명예군민패(별지 제3호 서식)